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박대출의원안)	3
2.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박대출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기간연장(신영대의원안)	10

I. 개요

1.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안 제109조의 2).
-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박대출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감면요건 - 노후자동차('09.12.31. 이전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차(경유차 제외)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 ○ 감면율: 개별소비세액의 70%(최대 100만원)	☐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09조의2 신설) ○ 감면요건 - 노후자동차('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차(경유차 제외)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 ○ 감면율: 개별소비세액의 70%(최대 100만원)
○ 적용기간(부칙 제2조): '20.1.1부터 '20.6.30.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정	○ 적용기간(안 부칙 제2조): 시행일부터 '24.12.31.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정
○ 경과조치: '19.12.31.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19.12.31.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경과조치: 시행일 전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시행일 전일 이전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박대출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59)

☐ 개정안은 2024년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¹⁾에서 언급된 내수·수출 회복 및 소비진작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1)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4.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²⁾는 노후자동차를 신차(경유차는 제외)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주고 있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되었음.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9년의 경우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으로 4,192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고,

2016년 및 2019년의 경우 각각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으로 573억원과 703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으며,

2020년의 경우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³⁾ 교체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으로 476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법률 제16835호 부칙(2019. 12. 31.)」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동 특례제도는 노후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차령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당초 정부안은 차령 15년 이상의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하는 내용이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을 차령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연혁]

시행기간	감면내용	대 상 차량수	교체수량 (교체비율)	조세지출
2009. 5. 1. ~ 2009.12.31. (8개월 간)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391만대	38.2만대 (9.8%)	4,192억원 개소세: 3,224억원 교육세: 968억원
2016.12. 5. ~ 2017. 6.30. (7개월 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150만대	5.4만대 (3.6%)	573억원 개소세: 441억원 교육세: 132억원
2019. 1. 1. ~ 2019.12.31. (1년 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157만대	8.2만대 (5.2%)	703억원 개소세: 541억원 교육세: 162억원
2020. 1. 1. ~ 2020. 6.30. (6개월 간)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516만대	7.2만대 (1.4%)	476억원 개소세: 367억원 교육세: 109억원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현행 「개별소비세법」 4)에 따라 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캠핑용자동차 및 이륜차는 모두 출고가가격의 5%를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액의 10%)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대 감면액은 개별소비세 감면액 한도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13만원을 합하여 총 143만원이 됨.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개정안은 종전의 특례와 동일하게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PM-2.5⁵⁾ 농도는 25.3 $\mu\text{g}/\text{m}^3$ 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치(평균치 12.1 $\mu\text{g}/\text{m}^3$)보다 2배 이상 심하고,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핀란드(4.9 $\mu\text{g}/\text{m}^3$)에 비하면 5배 이상 심한 것으로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OECD 주요국의 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mu\text{g}/\text{m}^3$)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핀란드	6.9	6.3	5.9	6.2	5.7	5.3	5.2	5.5	5.4	4.9
캐나다	7.1	7.4	7.0	7.2	6.9	6.2	6.8	6.9	6.0	6.3
노르웨이	8.7	7.3	7.1	7.1	6.8	6.3	6.5	6.7	6.4	6.1
미국	9.2	8.9	8.6	8.4	8.1	7.3	7.7	7.7	7.1	7.7
호주	7.2	7.4	7.3	7.3	7.1	7.1	7.3	7.6	9.2	8.1
스페인	13.4	12.1	11.3	10.6	11.3	10.4	10.5	10.3	9.5	9.7
영국	12.7	11.3	11.2	10.6	10.3	9.8	10.2	10.0	9.7	9.7
일본	12.3	12.8	13.2	13.7	12.8	12.8	13.0	13.0	12.8	12.6
프랑스	13.5	12.3	12.2	10.5	11.2	10.4	10.3	10.3	9.7	9.5
네덜란드	16.0	14.2	13.2	12.5	13.0	11.9	12.6	12.0	11.3	10.8
독일	15.7	13.9	13.7	12.3	12.8	11.8	11.9	11.7	10.7	10.3
OECD 평균	15.2	14.3	14.3	13.8	13.7	13.0	13.1	12.9	12.1	12.1
헝가리	21.2	18.8	17.7	17.8	17.9	16.1	16.9	17.4	14.5	14.0
한국	24.7	25.3	27.2	28.1	26.1	26.4	25.7	25.5	25.5	25.3

자료: OECD, 「<https://data-explorer.oecd.org>, Exposure to air pollution」 2024. 6.(지표누리 재인용)

5) 미세먼지는 PM-2.5(초미세먼지,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0.0025mm)보다 작은 먼지), PM-10(미세먼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0.01mm)보다 작은 먼지)로 구분되며, 특히 PM-2.5는 입자 크기가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폐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0.0045g/km로 강화·적용되고 있으나⁶⁾, 자동차를 실제 주행할 때에는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환경부의 연구결과⁷⁾를 고려할 때에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 구입이 가능한 신차의 범위에서 경유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미세먼지를 감축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수입신고하여 신규등록한 신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시기를 감안하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유도하는 조세유인 효과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정부는 당초 개정안의 입법목적 중 하나로 자동차산업에 대

6)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연혁

구 분	경유차량		휘발유·LPG차량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
2002년 이후	0.65g/km 이하	0.07g/km 이하	0.19g/km 이하	-
2006년 이후	0.33g/km 이하	0.04g/km 이하	0.031g/km 이하	-
2009년 이후	0.235g/km 이하	0.005g/km 이하	0.031g/km 이하	-
2014년 이후	0.08g/km 이하	0.0045g/km 이하	0.031g/km 이하	-
2016년 이후	0.08g/km 이하	0.0045g/km 이하	-	-

주 * 해당 배출기준은 휘발유, 경유 모두 중형승용차 기준

** 질소산화물은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유발

*** PM 중 입자 직경이 0.01mm미만은 미세먼지, 0.0025mm미만은 초미세먼지로 규정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참조

7) 환경부, 「미세먼지 팩트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19. 1.)」 p.81

-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직접배출 입자상물질(PM)은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의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은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훨씬 많음.
-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유로-6 경유차(2014년 이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차)의 실도로 NOx 배출량은 실내시험기준 대비 평균 7배에 이르는 반면, 휘발유나 LPG 차량은 실도로에서도 실내시험기준을 충족함.

한 지원효과를 내세웠었으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산업지원 목적의 조세지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동차산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⁸⁾을 보면, 2024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내수판매는 0.9% 감소하였으나, 수출판매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4년 자동차산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단위: 천대, 억불, %)

구분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률	상반기 (추정)	증감률	하반기 (전망)	증감률	연간 (전망)	증감률
내수	1,696	897	851	1,748	3.1	802	-10.7	843	-0.9	1,645	-5.9
국산차	1,385	759	692	1,452	4.8	672	-11.5	698	0.9	1,370	-5.6
수입차	311	138	158	296	-4.7	130	-5.9	145	-8.4	275	-7.2
수출	2,300	1,421	1,345	2,766	20.3	1,59	2.7	1,401	4.2	2,860	3.4
수출액	486	476	465	938	93.0	487	2.9	493	5.9	980	4.4
완성차	541	356	352	709	31.1	372	4.4	375	6.5	747	5.4
부품	233	116	113	230	-1.6	115	-1.5	118	4.1	233	1.3
생산	3,757	2,198	2,046	4,244	13.0	2,162	-1.6	2,078	1.6	4,240	-0.1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셋째,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시행시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개정안의 도입은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 세수기반을 보다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한시적

8) 「2024년 자동차산업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4. 6.23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이 6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⁹⁾하였음.

넷째,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감면 대상을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로 규정하기보다는 배출가스등급제¹⁰⁾에 따라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2023년 12월 등록기준 222만대로 전체 차량의 약 8.6%를 차지)으로 한정하여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9) 2024년 8월 시행을 전제하여 5개월 분에 대하여 추계함.

10) 환경부는 유종, 연식,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
[승용 자동차의 등급 산정 기준]

차종 등급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4등급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0.060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g/km 이상)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 0.050g/km 이하)

2.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박대출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기간연장(신영대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1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¹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1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전통시장 ※ 2024.1.~6. 사용분 (박대출의원안) ※ 2024.1.~12. 사용분 (박수영의원안)</td><td>40% (80%) (8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1.~6. 사용분 (박대출의원안) ※ 2024.1.~12. 사용분 (박수영의원안)</td><td>10% (20%) (20%)</td></tr><tr><td>-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신영대의원안)</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 2024.1.~6. 사용분 (박대출의원안) ※ 2024.1.~12. 사용분 (박수영의원안)	40% (80%) (8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1.~6. 사용분 (박대출의원안) ※ 2024.1.~12. 사용분 (박수영의원안)	10% (20%) (20%)	-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신영대의원안)	1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 2024.1.~6. 사용분 (박대출의원안) ※ 2024.1.~12. 사용분 (박수영의원안)	40% (80%) (8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1.~6. 사용분 (박대출의원안) ※ 2024.1.~12. 사용분 (박수영의원안)	10% (20%) (20%)																														
-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신영대의원안)	10%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td><td>2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td></tr><tr><td colspan="2">24년 소비 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 공제 한도: (현행과 같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 박대출의원안 2024. 6. 20. 제출(의안번호 759), 박수영의원안 2024. 10. 21. 제출(의안번호 4796), 신영대의원안 2024. 10. 31. 제출(의안번호 5111)

□ 박대출의원안과 박수영의원안은 2024년 초 발표된 「2024년 경제 정책방향」¹³⁾에서 언급된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진작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① 2024년 1월~6월(상반기, 박대출의원안) 또는 2024년 1월~12월(상·하반기, 박수영의원안) 동안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80%로 40%p 상향조정하고,

② 2024년 상반기 또는 상·하반기 동안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¹⁴⁾ 중 전년 동기(同期) 대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10%보다 10%p 높은 2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며,

신영대의원안은 2024년에 한시 적용하기로 한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13)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4.1.4.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3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가게 소비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¹⁵⁾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은 둔화될 것이나,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¹⁶⁾·고금리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¹⁷⁾에 따르면 2025년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3건의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확대 등이 입법화될 경우 가게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이후 소상공인 체감 BSI 및 전통시장 체감 BSI 모두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확대 또는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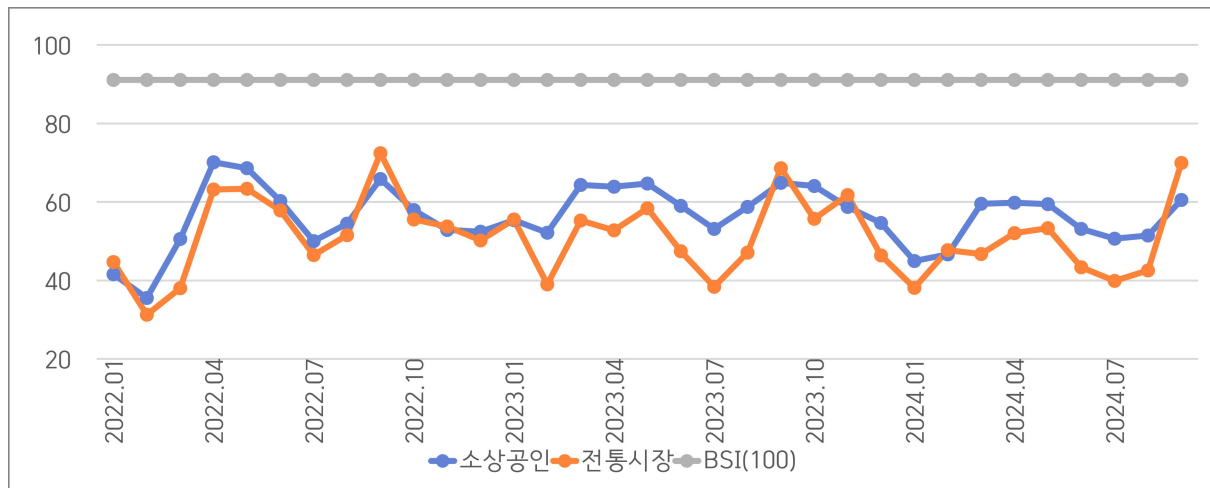
15)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4. 7. 3.

16) 물가상승률(%): ('21) 2.5 ('22) 5.1 ('23) 3.6 ('24) 2.6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2.0%]

17) 「2025년 NABO 경제전망:2024~2028」, 국회예산정책처, 2024. 10.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은 2024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소상공인시장 체감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셋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은 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박대출의원안과 박수영의원안은 2024년 상반기 또는 2024년 상·하반기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8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방문 및 매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대출의원안과 박수영의원안은 각각 2024년 상반기 또는 2024년 상·하반기 동안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및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상향을 규정함으로써 소비를 유도

하려는 것이나, 법률 개정 시기를 감안하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려는 신영대의원안의 경우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412만 5,000개¹⁸⁾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 전통시장 내 사업체(점포) 수는 23만 2,206개¹⁹⁾로 조사되어 전체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²⁰⁾됨.

따라서 2024년 상반기 또는 상·하반기 동안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매출회복을 도모하려는 2건의 개정안은 약 94.4%의 소상공인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8)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19)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20) 참고로 위 조사들에 따를 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714만 3,000명이고, 전통시장 점포 종사자 수는 31만 6,315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중 전통시장 내 점포 종사자수의 비중은 약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먼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료품 주 구입 장소 중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고,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접근성, 가격, 품질 순이며,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²¹⁾되었음.

[식료품 주 구입 장소 비교]

(단위: %)

구입 장소	비중
대형할인점	32.5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9.9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15.7
재래(전통)시장	12.2
통신판매	5.4
편의점	1.2
친환경 식품 전문점	0.7
백화점	0.7
기타	1.7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가구의 식료품 주 구입장소 선택 이유]

(단위: %)

이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30.3	29.5	31.3	27.8
- 품질이 좋아서	19.9	18.7	19.2	18.3
- 가격이 저렴해서	19.5	18.5	16.0	18.8
- 식료품 외 다른 상품도 구입	13.1	14.2	15.5	15.0
- 직접 배달해주므로	6.4	5.8	5.3	6.4
- 상품이 다양해서	9.6	10.8	10.2	10.6
-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1.2	2.1	2.2	2.7
- 지역산 농식품 구입	0.0	0.4	0.2	0.4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21)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다섯째, 2023년 11월 국회 심의²²⁾를 거쳐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당시 전통시장에 대한 2023년 4월~12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10%p 상향하여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상향된 공제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²³⁾가 있었으나,

정책의 장기화에 따른 효과성 감소 등을 감안하여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23년 4월~12월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공제율 10%를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의결하였는데, 2024년 정기회에서 이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박대출의원안과 박수영의원안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80%의 이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23년 4월~12월 기간 중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 소득공제율은 5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

23) 「제410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제3차회의 회의록」, p.63.~p.64. 2023.11.20.

문 의 처

02)6788-5160
